

고성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4
------	-----

제출년월일 : 1999. 7. 12.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가 5년간 100분의 50이 경감되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자는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최초입주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농공단지(율대, 회화)에 2003년 12월 31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도 최초입주하는 자와 같이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50%를 경감한다.(안 제24조의 4)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경상남도 세정13415-10078('99.2.9) 「지방세감면조례증개정 조례 표준안」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제99-94호

4. 본문 : 붙임 참조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율대농공단지
2. 회화농공단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u>< 신설 ></u>	<p><u>제24조의4(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1. 율대농공단지</u></p> <p><u>2. 회화농공단지</u></p>